2023. 2. 14.(화) 10:00
제3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

5.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중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달성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을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로 하고,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을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을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전거주차장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20.)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 공원, 하천, 공공기관,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7. 20.)	② 삭제 (2018. 7. 20.)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및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운영)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 2023년 1월 27일

2. 제출자: 신동윤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4조)

○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6조)

5.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통한 경영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성을 통한”을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은 경역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1. ~ 4. (현행과 같음)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계 법령(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 인력 · 판매 · 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중년 지원조례 제정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신중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안 제4조 ~ 제5조)
○ 신중년 지원사업의 재정지원근거 (안 제6조)
○ 신중년 지원시설 및 운영, 위탁 (안 제7조)
○ 신중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 제9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5.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신중년이라 정의하고,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지원사업, 지원시설,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중년 층의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이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3. 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달성군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신중년층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달성군 소재의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5.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대상 및 사업, 지도·감독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위생업소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위생업소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2. 안전한 위생관리 및 그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위생관련 교육의

개최 또는 수강

3.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 또는 개최

4.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기술 발전 등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참가, 견학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의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군수가 마련한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 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은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생략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 · 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 · 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 · 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 · 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 · 검사 ·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 · 판매하는 업소

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 ⑪ 생략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 ·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명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조례에 적용받는 지원대상과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과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5.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개인보호 안전장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의 구체적 기준은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17.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명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 및 「지방공무원법」개정(2022. 1. 21.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련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0조)
○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양교육 및 연락유지(안 제11조 ~ 제12조)
○ 출장 후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안 제13조 ~ 제14조)
○ 공무국외출장비의 부당 지출에 대한 환수(안 제15조)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출장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규칙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3조만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서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3조에 따라 의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 심사·허가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의 공무국외 출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 견학 ·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

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1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3명, 의사팀장, 달성군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 때문에 별도 마련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락유지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의회사무국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1월 27일

2.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명

3. 제안이유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임전문위원의 사무를 추가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선임전문위원 사무 추가

- 기존 전문위원의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겸임 내용 추가

○ 정책지원관 세부적인 사무 신설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 연구단체 지원
-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임전문위원의 사무를 추가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시한 사안으로 규칙안의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임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4조(전문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선임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 조사 ·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 도의 의회사무처,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 · 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④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 · 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 · 군 · 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가 의원정수의 1/2로 확대됨에 따라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1,015명 → 1,019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21명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별표 3]

- 총 정원: 1,015명 → 1,019명
- 의회사무국 정원: 17명 → 21명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가 의원정수의 1/2로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임기제7급 정책지원관을 4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달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15명에서 1,01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1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1,015명” 을 “1,019명” 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제2호 중 “17명” 을 “21명”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1,0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제2조(정원의 총수) ----------1,019명----------. 1. 현행과 같음 2. ---------- : 21명

【별 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소 속 기 관	직 할 기 관	사업소	별 정
총 계	1,019	653	21	112	177	56
군 수	1	1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34	612	18	82	169	5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소	속	기	관
총 계	1,015	653	17	112	177	56
군 수	1	1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30	612	14	82	169	5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소	속	기	관
총 계	1,019	653	21	112	177	56
군 수	1	1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34	612	18	82	169	5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 · 도의회의 의장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 · 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 · 군 · 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청년혁신위원회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요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정기회 운영 횟수 변경(안 제11조)

5.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정기회의 운영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급변하는 청년 세대의 요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을 “(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위원회” 를 “청년혁신위원회” 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의 일자리 · 고용업무 부서장,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

제8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 · 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11조 중 “연 1회” 를 “연 2회” 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를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청년혁신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 청년·일자리·복지·주거·고용·문화예술·교육·건강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년의 일자리 · 고용업무 부서장,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촉 · 임명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연 2회 - - - - - - - - , ---------- ---------- ----------.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 ----------,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 ·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8조)

○ 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5조)

-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공용공간 이용, 프로그램 상호연계 등)

- 센터별 운영주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21조)

○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5. 관계법령

○ 지방지치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관련법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2.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 · 허락 · 승낙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시설 내 일정 공간 또는 시설물 등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이 시설의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유 ·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부분" 이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4. "공용부분" 이란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 ·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내 공간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한다.

제5조(운영시간) 시설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 및 사회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용부분 관리·운영비 분담) ① 공용부분의 관리·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말한다)는 시설 사용자가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액은 시설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시설의 시설물·장비를 파손·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

제8조(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이나 시설의 시설물·장비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협의 및 사용자 각자 운영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연계 등을 위하여 시설 내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사이의 공용부분 관리 · 운영비 분담 등 공용부분 관리 · 운영과 관련한 사항

2. 사용자 각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 등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 ·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 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 구성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 사용자 7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유가읍, 현풍읍, 구지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 각 1명

3. 시설 관리 · 운영 또는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상호 연계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2명

③ 시설의 전용부분 사용자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그 사용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용부분 면적 순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용부분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실비지급) 군수는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에게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장 위탁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시설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여 위탁 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거나 설치한 시설물로서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그 시설물이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2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 및「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른 제명 수정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3조제1항)

○ 달성남부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안 제2조, 별표1)

○ 별표1 신설에 따른 별표1~2 조정(안 제12조제4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함(안 제23조제5항)

○ 현재 시행중인 법규명칭 반영(안 제36조)

5. 관계법령

○ 도서관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립도서관의 추가 건립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제4항 중 “별표1과”를 “별표2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을 “별표3과 같이 비용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표2 및 별표3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5-2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부속시설물의 사용) ① ~ ③ (생 략) 1. ~ 4. (생 략)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부속시설물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별표2와 ---.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사용료) ① ---------- ---------- -----별표2----------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도서관법」「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 3 6 조 (준 용 규 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신설>

[별표1] 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죽곡리)	
달성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중리)	

[별표1]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제14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2] 사용료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별표3] 복사 등 비용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별표1】

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달성군립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13(죽곡리)	
달성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중리)	

【별표2】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표(제12조, 제14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문화강좌실 (기본사용료)	1회사용 (3시간 기준)	40,000원	· 기본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 단, 일과 후 사용은 50%가산함
전 시 실	1회사용 (1일 기준)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 단가임.
음향장비		10,000원	
냉·난방		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3】

복사 등 비용 기준표(제15조 관련)

구 분	사용료	비 고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30원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매당 40원	
A4 규격의 단면인쇄	매당 50원	

관계 법령(발췌)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재단의 설립 목적 확대에 따라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안 조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장학사업 외 교육지원사업 등 설립 목적 추가(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사업 등 규정(안 제3조 ~ 제6조)

○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와 기구의 설치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재단의 재정출연 및 운영경비 지원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재단의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서 제출 규정(안 제14조 ~ 제15조)

○ 재단의 관리 감독 및 제재 관련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19조)

5. 관계법령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지방공무원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 외 교육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달성교육재단은 달성의 교육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사업과 미래인재 육성과제 추진을 통해 학생, 학부모, 평생교육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도시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민법 제45조 등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 · 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장학사업)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 · 선발 ·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이하 "재단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제5조의 재단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동일 대상에 대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임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원의 여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이사회 등) ① 공익법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정관 및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간 예상 수입 및 군 등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군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지도 · 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취득 ·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운영 규정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 · 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 · 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의2(결산) 법 제1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출자기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출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수익금액(운영성과표의 사업수익이나 매출액 또

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이 10억원 이상일 것

제18조(지도 · 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 · 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 ·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

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지원의 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을 삭제

○ 제1조(목적)에 제20조를 삭제

○ 제2조(정의)에 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를 추가

○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을 제3조(군수의 책무)로 변경

○ ‘제2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을 삭제

○ 제4조(지원대상) 내용을 모두 삭제

- 제4조(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 제5조(지원기준) 내용을 모두 삭제

- 제5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변경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내용을 모두 삭제

• 제6조(위임·위탁)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일부를 기관·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8조(지원 중지), 제9조(환수 조치) 내용을 모두 삭제

○ ‘제3장 지도 및 감독 등’을 삭제

○ 제10조(지도·감독)를 제7조(지도·감독)로, 제11조(준용)를 제8조(준용 등)로 변경 후 제8조(준용 등)에 보조금법을 추가

5.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 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 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 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아이돌보미” 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임·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휴관일 지정 신설(안 제4조)
○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용어 수정 및 추가 (안 제4조)
○ 휴양림 위약금 규정신설(안 제9조 및 별표 3)
○ 자연휴양림 이용신청 (안 제11조)
○ 자연휴양림 손해배상(안 제12조)
○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신설(안 제13조)
○ 관리자 예약 및 매매·교환 등 금지 신설(안 제14조)
○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의 매매·교환 등의 금지조항 신설(안 제15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인원 및 사용금액 규정 개정 (안 별표1)

5.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이용신청, 손해배상, 위약금, 예약사항의 금지조항 등의 사항을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요일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 통합예약시스템 “이라 한다)” 를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이하 “통합예약시스템” 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를 “일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를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 중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를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

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은 주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해당

예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우선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일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설> 1. ~ 6.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단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1. 매주 화요일**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 **일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제11조(이용신청)①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 ----------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은 주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관리자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설>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해당 예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약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3조 ~ 제16조 (생략)	제16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1]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 집	콘도(1,2)	A형(30㎡)	1박	90,000	60,000	5인	
		B형(60㎡)	1박	160,000	110,000	10인	
	통나무집	A형(29㎡)	1박	90,000	60,000	5인	
		B형(67㎡)	1박	180,000	120,000	11인	
청소년수련관		A형(21㎡)	1박	70,000	50,000	4인	
		B형(96㎡)	1박	200,000	140,000	19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개 정 안

[별표1]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 집	콘도(1,2)	A형(30㎡)	1박	90,000	60,000	5인	
		B형(60㎡)	1박	160,000	110,000	9인	
	통나무집	A형(29㎡)	1박	90,000	60,000	4인	
		B형(67㎡)	1박	180,000	120,000	10인	
청소년수련관		A형(21㎡)	1박	70,000	50,000	4인	
		B형(96㎡)	1박	200,000	140,000	16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현 행

[별표1]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주중	주말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10인	
캠핑데크	소	7x4	1조/1박	30,000	15,000	2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개 정 안

[별표1]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주중	주말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8인	
캠핑데크	소	7x4	1조/1박	30,000	15,000	2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1]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 집	숲속의 집	A형 (50㎡)	1박	140,000	100,000	9인	
		B형 (68㎡)	1박	180,000	130,000	12인	
산림문화휴양관	휴양관	A형 (29㎡)	1박	90,000	60,000	5인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9인	-

[별표1]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 집	숲속의 집	A형 (50㎡)	1박	140,000	100,000	8인	
		B형 (68㎡)	1박	180,000	130,000	10인	
산림문화휴양관	휴양관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6인	-
	세미나실	(120㎡)	4시간	120,000	80,000	30인	-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3] 위약금 공제 기준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관계 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비슬산 치유의 숲의 운영일 및 휴무일을 통일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휴관일 지정(안 제4조제1항제2호)

5.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비슬산 치유의 숲의 운영일 및 휴무일을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통일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주 화요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 다. (생략) ② (생략)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매주 **화요일** 나.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련사업 전반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시설: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
○ 위탁범위: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위탁예산
- 운영비: 월 100만원
- 인건비: 센터장(월 309만원) 돌봄선생님(월 287만원)
○ 시설규모
- 전용면적: 162.93㎡
- 주요시설: 활동실(98.23㎡) 사무실(33.52㎡) 다용도실(31.18㎡) 등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위탁기간: 수탁일로부터 5년간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231에 건립 중인 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들어설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수탁기관이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성과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식)

① 센터는 군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각종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따라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사업: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3. ~ 2026. 2.(3년)

○ 수탁기관: (재)달성문화재단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조직 및 운영인력: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 11명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인 원	11	1	2	8	

○ 위탁대상 사무: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현황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 (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85.78	
현풍읍 원교리	93-5	토지 (대지)	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현풍권역)
	93-7	토지 (대지)	457	
		건물	58.5	

○ 소요예산: 90억 원(국 45, 시 13.5, 군 31.5)(3년간)

※ 2023년 사업비: 30억 원(국비 50%, 시비 15%, 군비 35% 정률보조)

※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총괄표: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성군이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 수행한 (재)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총괄표

구분	단위사업	세부프로그램	합계	예산액				
				'23	'24	'25	'26	'27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도시 참여구조 마련	소계	2,550	590	490	490	490	490
	다양한 문화가치의 교류와 통합의 장 마련	소계	2,550	510	510	510	510	510
	지역자원에 기반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산	소계	4,750	750	1,000	1,000	1,000	1,000
	지역문화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소계	5,150	1,150	1,000	1,000	1,000	1,000

관계 법령(발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 · 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2월 7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내 유휴공간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에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

- 법 인 명: (재)달성문화재단
- 사용기간: 2023. 3. ~ 2026. 2.(3년)
- 위탁시설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85.78	
현풍읍 원교리	93-5	토지(대지)	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현풍권역)
	93-7	토지(대지)	457	
		건물	58.5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달성문화재단에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적법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